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5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2일
제안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¹⁾에 따르면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쓰도록 권고하고 있음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현행 조례 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²⁾ 등 조제목에 맞춰 제6조제3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에 대한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제6조제3호 중 ‘운용·관리’를 ‘관리·운용’으로 수정함 (안 제6조제3호)

3. 참고사항 : 생 략

1) 법제처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- 열 번째판 -, p.87

마. 통일해서 쓸 용어

정비기준 :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.

2)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」 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6조제3호 중 “운용·관리”를 “관리·운용”으로 한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설치) (생략)	제3조(기금의 설치) (현행과 같음)	제3조(기금의 설치) 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	제6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	제6조(기금의 용도) (개정안과 같음)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	1. 2. (개정안과 같음)
3. 기금의 <u>운용·관리</u> 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		3. ----- <u>관리·운용</u> ----- -----
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	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	제7조(기금의 관리·운용)
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① (개정안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1. (개정안과 같음)
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도시계획과장</u>	2.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	2. (개정안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3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<u>운용·관리</u>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 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 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기금의 <u>효율적 인 운용·관리</u>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	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) ----- <u>관리·운용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관리·운 용에 관한 중요사항으 로써</u> ----- -----	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) (개정안 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(개정안과 같음)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 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 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	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설치)”를 “(기금의 설치)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운용·관리”를 “관리·운용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도시계획과장”을 “도시공간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용·관리”를 “관리·운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”를 “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시계획과장”을 “도시공간전략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)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〈 신 · 구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설치) (생 략)	제3조(<u>기금의 설치</u>)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	제6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기금의 <u>운용 · 관리</u> 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	3. ----- <u>관리 · 운용</u> ----- -----
제7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·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	제7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분임기금운용관 : <u>도시계획과장</u>	2.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<u>운용 · 관리</u>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 <u>관리 · 운용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4. 그 밖에 기금의 <u>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<u>도시계획과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략) ③·④ (생략)	4. ----- <u>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</u> ----- ----- 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도시공간전략과장</u>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